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재나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7. 21.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305001 판결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D에게 재심대상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22. 접수 제17039, 17040, 17041, 170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피고들이 매도인인 D에게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으로 마쳐졌다는 추정력을 뒤집고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1심 및 재심 전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권준범, 판사 장래아